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1년 7월 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생활제품안전과장 정의식(503-7996), 양재원 주무관(509-7246)		

‘목졸림 사고, 화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 만들어진다.

- 기술표준원, 창문블라인드, 온열팩 등 4개 품목의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유패드, 온열팩,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11.7.8일자로 입안 예고하였다.
- 새롭게 만들어지는 4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 **(수유패드)** 영아의 입에 직접 닿는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수유패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와 같이 **폼알데하이드** 및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온열팩)** 어린이용만 관리하고 있던 온열팩(일명 ‘주머니 난로’)에 성인용 제품도 포함시켜,
 - 화상방지를 위해 제품의 **최고온도(70℃)**를 설정하였고,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요건도 규정하였다.
 - **(창문 블라인드)**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목졸림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블라인드 줄을 고정시키거나, **일정하중(10kg이상)**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하였으며,

- **(휴대용 경보기)** 위급 상황시 큰 소리를 발생시켜 주위에 위험을 알리는 휴대용 경보기는,
 - 음량 표시의 불량으로 사용자의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품질수준도**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 사용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높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상기 4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7.29(금)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안)이 **확정되면 제정일로 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 현재 4개 품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추진 중(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5.20~6.10)

<참고 : 신규지정대상품목 안전관리 배경 및 추진 내용>

<참고>

신규 지정대상품목 안전관리 배경 및 추진 내용

1 수유파드

- (배경) 폼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등의 유해물질 용출시 영아 및 수유부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안전관리 필요

* 수유파드 : 모유수유 기간 동안 모유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유부가 착용하는 직물 또는 부직포로 만들어진 제품



- (안전관리 현황) 수유파드에 대한 **국내외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임**
 - 유사품목인 일회용 기저귀, 여성용 생리대에 대하여 폼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등을 규제하고 있음
 - * 유사품목인 일회용 기저귀는 「품공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여성용 생리대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관리 중

- (제정안의 주요 안전기준)

항 목		기 준 치
pH		3.0 ~ 10.0
형광증백제		검출되지 않을 것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mg/kg)		20 이하
염소화페놀류 (mg/kg)	PCP	0.5 이하
	TeCP	0.5 이하
아조염료 (mg/kg)		각각 30이하

2

온열팩

- (배경) 최근 유통중인 온열팩(핫팩)의 온도가 90℃ 이상까지 상승하여 화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높음



- (안전관리 현황) 온열팩(핫팩)은 「품공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완구로 관리(열 발생원을 가진 완구)

- KS 국가표준(주머니 난로)에서 최고온도를 70℃로 규정

- 군(軍)에 조달되는 군용 온열팩(보온대)은 최고온도를 85℃로 관리

<외국의 관리사항>

- 일본의 경우 카이로 협회에서 일본의 JIS 규격(JIS S 4100)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최고온도 70℃이하)

* 저온 화상(40~44℃의 온도에서 장기간 접촉에 의한 화상)이 다수 발생

- (제정안의 주요 안전기준)

- 최고온도 기준 설정: 70 ℃ 이하
- 사용 중 접촉되는 부위에 대한 총 납, 총 카드뮴의 함유량이 각각 300mg/kg 이하
- 액체형인 경우 사용 중 접촉부위에 대하여 프탈레이트가소제, 8대 중금속 용출 기준
- 저온화상의 주의 등 사용상 주의사항 규정

3 창문 블라인드

○ (배경) 유아 및 아동이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질식사하여 사망하거나, 걸려 넘어져 상해가 생기는 사고 발생

○ (사고 사례)

[국 내]

- (사례 1) '10.2.8 광주 북구에서 4살 남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숨짐
- (사례 2) '04.2월 경기 부천시에서 2세 남아가 커튼 높이 조절용 줄에 목이 감겨있어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숨짐

[국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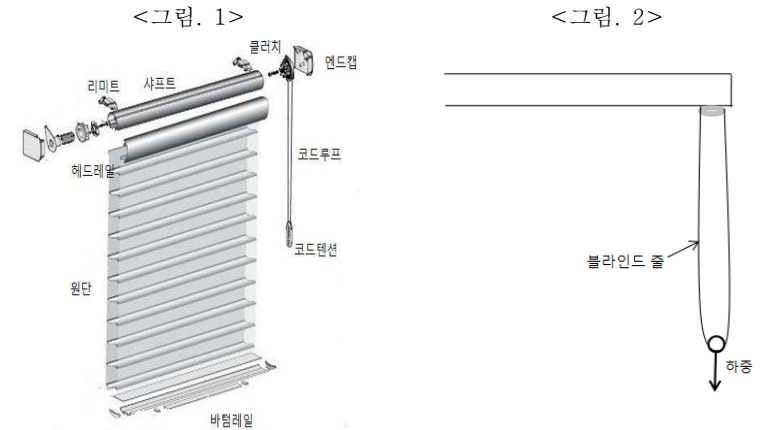
- (사례 1) '11.4.4 영국에서 21개월 남아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걸려 침대 위에서 숨진채 발견
- (사례 2) '10.3 영국에서 3세남아와 16개월 여아가 블라인드줄에 걸려 숨짐
- (사례 3) '08.2.7 스코틀랜드에서 2세 여아가 침대위에서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긴채 사망



○ (안전관리 현황) 창문 블라인드에 대한 국내외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임

○ (제정안의 주요 안전기준)

- 블라인드 줄에 98N이상 하중이 재하시 연결고리, 클러치 등 부품이 분리되거나 블라인드 줄이 끊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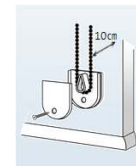


- 블라인드 줄이 하나이거나 두개의 줄로 분리된 경우 유아 및 아동의 목에 감기지 않도록 끝단으로부터 최소 60cm이상까지는 휘어지지 않는 재질의 보호캡으로 덮여있을 것



- 블라인드 줄의 하단부분을 벽에 밀착하여 고정시키거나 부착될 수 있도록 하며 설치시 줄과 벽간의 간격은 10cm이내이어야 할것

<그림. 5>



- (배경) 음량 불량으로 사용자의 청력에 장애를 줄 수 있고, 품질 수준도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 휴대용 경보기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면 큰 소리(85~130데시벨 까지)를 발생시켜 주위에 위험을 알리는 제품(130데시벨은 제트기 엔진 소리)

【종 류】



버튼형은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작이 매우 간단



당김형은 경보기에 핀을 뽑으면 소음이 발생하며 핀을 다시 끼워 넣어야 경보음 멈춤 형태로 대부분이 이에 해당

- (안전관리 현황) 휴대용 경보기에 대한 국내의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임
- * '10년 안전성 조사결과 : 시중 38개 제품 중 음량, 내구성 등 내부기준 미달 23

<외국의 관리사항>

- 일본의 경우 정부 및 학부모회 공동기준(SBA S 1602)을 만들고, 이에 따라 우수한 경보기를 사용토록 민간 자율인증

- (제정안의 주요 안전기준)

주요항목	기준치
초기작동	- 음압레벨이 떨어지거나 불안정한 동작이 없어야 한다.
음 색	- 경보음은 다른 음과 구별되게 단일 주파수가 아닌 발생음이 3.5Hz ~ 30 Hz 사이로 상승/하강을 되풀이하여야 한다.
연속사용시간	-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음압의 90 %이상을 20분 이상 연속 경보음이 발생 가능하여야 한다.
경고 표시	- 소리가 매우 크므로 귀에 가까이 대고 작동하지 마십시오. -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린이와 노인의 청력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